



제422회국회(임시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학교법인의 재산 관리 및 회의록 관련 규정 강화 〉
■ 김영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563호)

2025. 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영호 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17.
3. 회부연월일 : 2024. 12.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 및 학교법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학교법인의 재산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취득·처분하도록 하고, 회의록을 작성 및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별도의 제재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학교법인의 임원이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임의로 학교법인의 재산을 취득·처분한 경우 벌칙에 처하고, 이사회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현행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6항, 제73조의2제2항 및 제74조제2항제3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임의로 학교법인의 재산을 취득·처분한 경우 벌칙에 처하고, 이사회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 ⑤ (생략) <u><신설></u>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학교법인의 임원은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임의로 학교법인의 재산을 취득·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73조의2(벌칙) (생략) <u><신설></u>	제73조의2(벌칙)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② 학교법인의 임원이 제28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제74조(과태료) ① (생략) ② 학교법인의 이사장, 감사 또는 청산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	제7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현행	개정안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u><신설></u> 4. ~ 10. (생략) ③ ~ ⑤ (생략)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u> 4. ~ 10.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1. 임원의 학교법인 재산 임의 취득·처분 금지

현행법은 학교법인의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으로 명시¹⁾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 하에서도 학교법인의 임원이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재산을 취득·처분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임. 2024년 4월 교육부가 학교법인 우암학원 및 전남과학대학교를 상대로 실시한 재무감사에서도 우암학원 및 소속학교는

1) 「사립학교법」 제16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해당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사회 심의·의결과 달리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수의계약을 맺은 바가 적발되었으나, 벌칙 규정이 부재하여 감사결과 경고조치에 그친바 있음.

이상을 고려했을 때, 개정안과 같이 임원이 학교법인의 재산을 임의로 취득·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대해 벌칙 규정을 추가하는 것은 현행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2. 회의록 미작성, 미공개시 과태료 부과

현행법은 이사회 회의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은 부재한 사항임. 따라서 회의록을 미작성하거나, 미공개하더라도 별도의 제재조치는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임.

개정안과 같이 회의록 작성, 공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한다면, 이사회 회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정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²⁾에서도 회의록 작성, 공개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정을호 의원안은 회의록 공개를 회의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5년 동안 공개하도록 구체화

2) 의안번호 제2207434호,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

하고, 녹취록도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3. 관련기관 의견

교육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나, 개정안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원’은 법인격을 가진 학교법인의 구성원에 해당하며, 재산 취득·처분의 주체는 학교법인이므로, 제28조제6항의 주체를 ‘학교법인’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학교법인의 ‘재산’이라고 하면, ‘보통재산’을 포함하는 등 그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명확히 할 필요³⁾가 있다는 입장임.

대학·전문대학·초중고법인협의회는 학교법인 임원이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학교법인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사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전체 사학에 대한 규제입법을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고, 임원의 이사회 심의·의결 없는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은 기존 법 내지 법 집행으로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으며, 또 재산의 종류나 가치에 따라 책임의 경중이 달라질 것인데, 이를 일률적으로 중한 형벌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책임원칙에 위반되는 것이고,

3)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설> ⑥ 학교법인은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임의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취득·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3조의2(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신설> 2. 제28조제6항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임의로 학교법인의 재산을 취득·처분한 경우

3. ~ 4. (현행 2. ~ 3.과 같음)

학교법인이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경우는 사립학교법령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관할청은 이에 대한 제재수단을 충분히 갖고 있으므로 굳이 과태료로써 제재규정을 둘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지원·육성이 아닌 규제 위주의 법이 되어 사립학교법 제1조와도 상치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는 학교법인의 ‘임원’은 법인격을 가진 학교법인의 구성원에 해당하므로, 주어를 ‘학교법인’으로 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학교법인의 재산이라고 하면, 의미가 모호하므로 사립학교법 제28조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88